

## 2026년 목재펠릿연소기(보일러·난로)지원사업 공고

주민들의 난방비 절감 및 고효율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「2026년 목재펠릿연소기(보일러·난로)지원사업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.

2025. 12.

파 주 시 장

### 1 사업 개요

- 가. 지원대상 : 목재펠릿 보일러, 난로, 운반용 리프트
- 나. 사업량 : 보일러 1대, 난로 1대<sup>\*예산범위 내</sup>
- 다. 지원규모 : 1세대(시설) 당 1대
- 라. 지원금액

#### ① 목재펠릿 보일러

- 주택용(임업,농업,상업용): 보조금 70%, 자부담 30%

#### ② 목재펠릿 난로

- 주택용: 150만원(그 외는 자부담)

#### ③ 운반용 리프트

- 주택용: 35만원(그 외는 자부담)

### 2 지원대상 및 자격요건

- 가. 지원제품 : [붙임] 참고 \*산림청 목재펠릿연소기(보일러,난로) 등록된 제품
- 나. 지원자격 및 요건
  -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파주시에 소재한 자
  - 자부담 능력이 있는 자
  - 국고보조를 받아 화목보일러 및 목재펠릿보일러 설치 후 5년이 경과한 자
- 다. 선정우선 순위

- 농산어촌 지역(행정구역상 읍·면) 거주자
- 국가 보조를 받아 설치한 보일러 중 업체 폐업으로 수리가 불가능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승인받아 폐기하고 재 지원을 받는 경우
- 1개 마을(행정구역상 리·동단위)에 5대 이상 집단으로 설치하는 경우

라. 지원 제외대상

- 유사자금지원 등 중복지원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
- 법령 위반 등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이 취소되고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
- 법인기업,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

### 3 지원접수 및 대상자 선정

가. 접수기간 : 2025. 12. 18.(목) 09:00 ~ 12. 31.(수) 18:00

※점심시간(12:00~13:00) 접수 제외

나. 접수방법 : 방문 또는 등기우편

다. 접수처 : 파주시 산림정원과 산림휴양팀(파주시 금바위로 10, 우10894)

\* 우편접수는 마감일시(2025. 12. 31.(수) 18:00)까지 도착분만 접수 인정

(우편접수자는 접수 여부를 반드시 확인 바람)

\* 서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신청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, 신청자가 보완을 이행한 후 접수 인정

라. 신청서류

- (공통서류) ① 지원신청서 1부
- ② 주민등록등본 1부
- ③ 건축물 대장 등 건축물 용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
- ④ 신분증 사본 1부
- (기타서류) 건물소유주 동의서(건물 임대한 경우에 한함)
- 거주확인서(건축물 대장상 명의를 상이한 경우 등)

마. 선정결과 발표 : 파주시청 홈페이지 부분 공개 및 개별 통보

## 4 기타 사항

### 가. 특이사항

- 「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 제17조에 따라 파주시에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이 있을시 보조금 교부결정이 제한됨
- 공고 이외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산림청 「목재펠릿연소기 지원 및 등록기준」과 파주시 결정에 따름

### 나. 주의사항

- 다음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의 선정을 취소하거나 지급된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음
  - ①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기 전에 목재펠릿 보일러·난로를 설치한 경우
  - ② 산림청에 등록하지 않은 목재펠릿 보일러·난로를 설치한 경우
  - ③ 자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았거나 납부사실이 허위임이 발견된 경우
  -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의무사용기간(5년) 이내에 목재펠릿 보일러·난로를 이전하거나 폐기한 경우
  -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지원 대상자 및 설치장소 등을 변경하여 설치한 경우
- 지원대상자는 사후관리기간(5년) 동안 파주시장의 승인 없이 보조금으로 취득한 보일러의 용도변경·양도·교환·대여 및 폐기할 수 없음
-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, **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후 3개월 이내 설치완료 하여야 함.**

### 다. 문의처

- 기타 상세한 내용은 산림정원과 산림휴양팀(☎940-4612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